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 16. 강승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 1.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승규의원)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 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청항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2022년 이후 고금리·고환율, 내수부진과 경기둔화 등 복합적 경기 악화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2022년 6,678억 원에서 2025년 1조 5,677억 원으로 8,999억 원(134.8% 증) 증가한 반면, 연간 구상권 회수액은 2022년 1,717억 원에서 2025년 1,462억 원으로 255억 원(△14.9%) 감소되어 2025년 구상권 회수율은 2022년 대비 0.7%p 하락한 2.8%에 불과한 실정임.

개정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기에 특정·압류할 수 있어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 요구대상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예금자보호법」¹⁾이 있음.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과세정보 요청항목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및 재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환급금 등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과 재산의 종류, 금액, 납세자, 납세지 등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자료를 채무자 임금채권, 은닉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에 활용하여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회수율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²⁾.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 회수 제고를 위해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공요청 항목을 명확히 하려는 조항 신설에 동의하는 한편, 원활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개정안이 규정한 과세자료에 더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등 추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국세청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정보를 요청하였지만 「기술보증기금법」에 해당정보를 요청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고 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에 더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과세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과세정보가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에 더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과세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를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u>국민건강보험공단</u>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u>근로복지공단</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 ----- ----- ----- --- <u>국민건강보험공단</u> ,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에 따른 <u>근로복지공단</u> , 「 <u>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가상자산사업자</u> 및 그 밖에-- ----- ----- ----- -----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② ----- <u>납세자의 인적 사항</u> <u>과 사용 목적</u>----- ----- ----- -----다 <u>음 각 호의 과세정보</u> <u>제공</u>----- --. ----- ----- ----- ----- ----- ----- ----- ---. 1. 「소득세법」에 <u>따른 과세대상</u> <u>소득의 종류, 금</u> <u>액, 원천징수의무</u> <u>자 및 납세지</u> 2. 「상속세 및 증	②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	--	--

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
개시일 및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
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
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
급에 관한 특례
법」에 따라 납
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
금

6.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

6. 그 밖에 과세정
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료 또는 정보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으로,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 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u>국민건강보험공단 및</u> <u>「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u> <u>른 근로복지공단,</u>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 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 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 ----- ----- ---- <u>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u> <u>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u> <u>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u> <u>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u> <u>및 그 밖에</u> ----- ----- ----- ----- ----- ----- ----- ----- -----. ② ----- <u>납세자의</u> <u>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u> ----- ----- ----- <u>다</u> <u>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u> ---- -----.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u>과세정보(종합</u> <u>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u> <u>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u>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③ · ④ (생략) <u><신설></u>	<u>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u> ③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